

학교폭력 이렇게 예방하고 대처합니다!

2022학년도에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를 만들기에 힘쓸 것을 약속드리며, 가정에서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① 학교폭력은 무엇이고 어떻게 예방하나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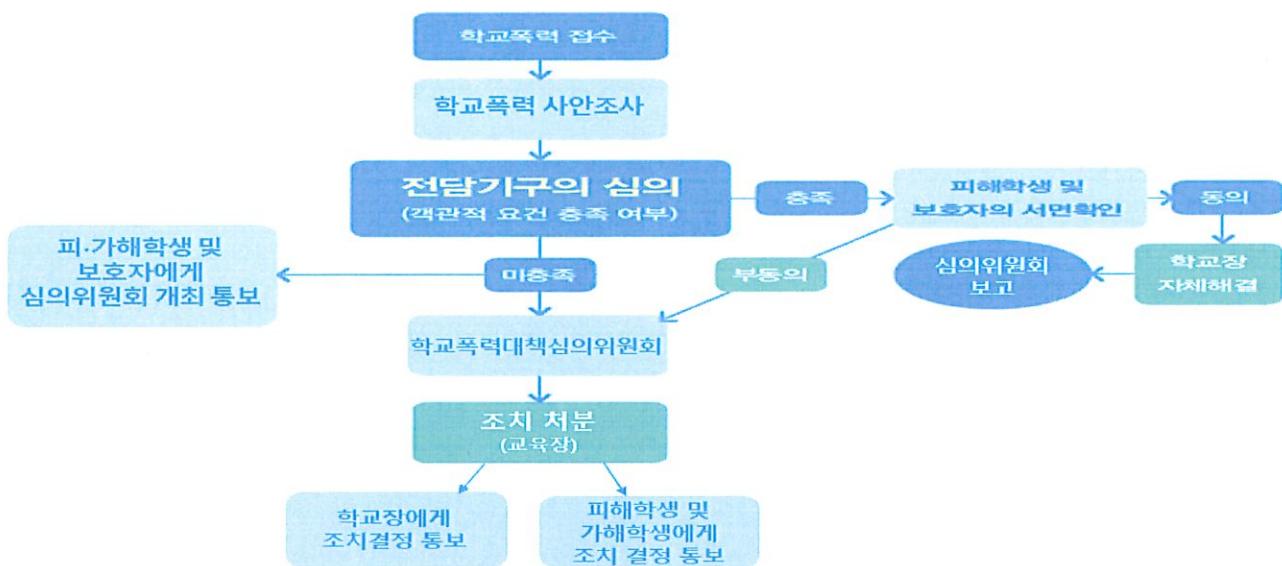
- 학교폭력의 정의 (학교폭력예방법 제2조)

'학교폭력'이란 학교 내·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, 폭행, 감금, 협박, 약취·유인, 명예훼손·모욕, 공갈, 강요·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, 따돌림, 사이버 따돌림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·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·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

-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부모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.

- * 화목한 가정, 좋은 부모, 민주시민의 모습을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세요.
- * 밥상머리 교육 등 가정의 교육기능을 적극 발휘하여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, 공감, 인권존중의 중요성을 가르쳐주세요.
- * 가정 내에서 하루 10분 이상 대화해주시고, 언어순화교육에 힘써주세요.
- * '몰라서, 사소한 장난으로, 욱해서' 괴롭혀도 폭력임을 가르칩니다.
- *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면 자신도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므로(쌍방사안) 우선 현장을 피하고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도움을 청하도록 가르칩니다.
- * "스마트 안심드림" 어플을 자녀와 학부모님 핸드폰에 각각 설치하여, 사이버폭력으로부터 자녀를 지켜주세요.(학생·학부모 동시 설치 필요)

②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

- 학교폭력이 발생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, 학교 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사가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합니다.

- ※ 피해학생 보호, 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학교에서 긴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
- ※ 학교폭력으로 접수되면 피해추정 학생과 가해추정 학생을 즉시 분리하여 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(분리조치- 최대 3일)
 -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여부를 학교전담기구에서 심의합니다.
 - 4가지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고, 피해학생 및 보호자 동의가 있다면 ⇒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

학교장 자체해결이란?	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등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▶ 학교장 자체해결 시행 시,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심의과정 없이 조기에 교육적인 방식으로 교우관계의 회복을 도모합니다. (학교폭력 관계회복 프로그램 활용) ▶ 학교폭력 관련 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. 	

-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경우, 학교가 아닌 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”에 출석하여 피·가해학생 조치를 받게 됩니다.

< 피·가해학생 조치 목록 >

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	1호	심리상담 및 조언	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	1호	서면사과	6호	출석정지
	2호	일시보호		2호	접촉, 협박, 보복 행위금지	7호	학급교체
	3호	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		3호	학교에서의 봉사	8호	전학
	4호	학급교체		4호	사회봉사	9호	퇴학
	6호	그밖의 조치		5호	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		

-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, 전라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2022년 10월 28일

만 경 중 학 교

